

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

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.

2026년 7월 16일

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



1.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채용분야	채용직급	채용인원	임용기간 (근무시간)
의장 의전업무 및 운전	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	1명	1년 (주 35시간)

2. 직무내용

채용분야	직무내용
의장 의전업무 및 운전	○ 의장 의전 및 의회 업무 지원 ○ 의장 전용차량 주·야간 운행 ○ 관용차량 점검 및 유지·관리 업무 등 ※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이상 소지 필수

* 근무실적 평가 등에 따라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

3. 법령 근거

- ☐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 및 제27조
- 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, 제17조, 제21조의3
- ☐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
- 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

4. 응시 자격 요건

☐ 공통 응시자격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 예정일)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
- 연 령: 20세 이상
- 지역·성별: 제한 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
「지방공무원법」

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
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
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-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-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“비위면직자등”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- 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-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-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

가. 「변호사법」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,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(유한),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

나.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

다. 「세무사법」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

라. 「외국법자문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

마. 삭제 <2022. 1. 4.>

바. 삭제 <2022. 1. 4.>

사.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

아. 「의료법」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 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

자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

-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

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)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

※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자세히 확인

☐ 분야별 자격요건(기준일: 면접시험 예정일)

○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

구 분	응시 자격 요건
의장 의전업무 및 운전 (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)	▶ 필수자격(1종 보통 운전면허증 이상 소지 필수(국내자격증에 한함)) 1.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※ 관련분야 실무경력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국회, 지방의회, 공공기관, 민간기업, 법인 등에서 의전, 운전, 행정 업무로 근무한 실무 경력(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, 담당 업무, 직위 상세히 명시) ▶ 우대요건 1. 무사고 운전 경력자(공고 게시일 이후 출력한 운전경력증명서(전체경력) 제출) 2. 의전 업무 특성상 평일 야간 및 주말·공휴일 근무 가능한 자

※ 경력기준 응시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이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(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10년)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[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]

※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해 인정(불분명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)

※ 전임근무(주40시간, 1일 8시간 기준)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경력증명서에 명시되어야 하며(예시: 주 35시간 근무), 전임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

5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☐ 응시원서 접수

○ 접수기간: 2026. 7. 27.(월) ~ 7. 29.(수) [3일간, 09:00 ~ 18:00]

○ 접수방법: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

○ 응시수수료: 7,000원

- 납부방법: (방문) 광진구 수입증지 날인 (등기) 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

〈 방문접수 〉

- 접수장소: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, 4층 의회사무국 의정팀
- 접수시간: 평일 09:00 ~ 18:00 / 점심시간(12:00 ~ 13:00) 제외
- ※ 접수마감일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능
- 광진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인증 날인
- ※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를 날인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

〈 등기우편 접수 〉

- 주소 : (우)05050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, 의회사무국 4층 의정팀
- 원서 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분에 한해 유효
- 채용분야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통상환증서를 우체국에서 구매 후 동봉
- ※ 우편접수는 도착일정을 고려하여 가급적 마감일자 이전에 등기 발송
- ※ 우편 접수 시 기재 서류 미비 등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
- ※ 우편봉투 겉면에 “2026년 광진구의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” 문구 표기
- ※ 통상환증서 구매는 우체국 금융 업무 마감시간 확인 요망
- ※ 대한민국 ‘정부수입인지’ 사용 불가

- ※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료 면제(해당자는 증명서 제출)
- ※ 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해 사용
- ※ 인터넷, 퀵서비스, 택배 등을 이용한 접수 불가

□ 시험일정
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	면접시험		면접시험 합격자 발표	임용일자
	일시	장소		
'26. 8. 4.(화)	'26. 8. 10.(월)	광진구의회 4층 소회의실	'26. 8. 11.(화)	'26. 8. 24.字 [예정]

- ※ 면접시험 공고 및 발표는 광진구의회 홈페이지(council.gwangjin.go.kr)에 게시
- ※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시험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

□ 시험방법: 경력경쟁임용

○ 1차 시험(서류전형) - 광진구의회 홈페이지 공고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-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-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원서접수일,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

○ 2차 시험(면접시험) - 광진구의회 홈페이지 공고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
- 평가방식: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, 능력 등이 담긴 평정요소를 각각 상·중·하로 평가 후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 결정
- 평정요소: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⑤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- (동점자 발생 시) 면접심사위원의 전원합의로 순위 결정(별도 평정표 없음)
- ※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

○ 최종합격자 발표 - 합격자 개별통보, 광진구의회 홈페이지 공고

- (추가합격)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및 임용 후 퇴직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,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6.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

- ☐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에 따른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
- 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
- ☐ 연봉 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(직급보조비, 시간외근무수당, 연가보상비 등)

구 분	근무시간	연 봉 액		비 고
		상한액	하한액	
의장 의전업무 및 운전 (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)	주 35시간, 5일 (09:00 ~ 17:00, 1일 7시간)	61,934천원	43,988천원	근무시간(35시간)에 비례한 금액

7. 제출서류

- ☐ **공통사항(필수사항)**
 - 응시원서(별지 제1호) 1부(응시수수료: 7,000원)
 - ※ 원서접수처(광진구의회사무국)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으니 반드시 광진구청 민원여권과 에서 증지를 날인해 오시기 바랍니다.
 - 이력서(별지 제2호) 1부
 -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따라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
 - 자기소개서(별지 제3호) 1부
 - 직무수행계획서(별지 제4호) 1부
 -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(별지 제5호) 1부
 - 개인정보 제공·이용 동의서(별지 제6호) 1부
 - 주민등록 초본 1부 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
 -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

- 운전면허증 사본(제1종 보통 이상) 1부
- 운전경력 증명서(전체 경력, 공고 게시일 이후 출력) 1부
- 채용 예정 직무 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
 - 경력(재직)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
 - 공무원 경력의 경우 증명서상 상별 내용 표기
 -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(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 범위 해당 업무를 반드시 기재)를 정확히 기재
 -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 담당자 서명(날인),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
 -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회사의 폐업·파산·합병 등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 등 증빙자료 제출
 - 비상근,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 단위 근무 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

□ 개별사항(해당자에 한해 제출)

-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
 -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-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(별지 제7호) 1부
 -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의 직무내용 기재가 안 될 경우 추가로 제출
-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(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, 상훈 등)
- 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는 한글 번역본(공증필) 반드시 첨부
- ※ 제출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해 인정
- ※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- 기타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관련 증빙자료(자격증, 어학검정서 등)

8. 기타(유의)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,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탈락자가 원할 경우 반환합니다.
(청구기간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)
-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 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)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광진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-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 ☎ 02-450-2831)

직무기술서

임용예정기관(부서)	임용예정직급	채용인원	임기
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(의회사무국)	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	1명	1년

주요업무	• 의장 행사 의전 지원 • 의장 전용 차량 주·야간 운전 • 의정활동 지원 • 관용차량(승합차 등) 운행 및 유지·관리
------	--

필요역량	• 공직윤리(공정성, 청렴성), 공직의식(책임감, 사명감), 고객지향마인드 등 • 문제해결력, 의사소통능력 •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능력 • 주기적인 차량 점검 등 차량의 유지·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
------	---

필요지식	• 도로교통법규 및 도로체계에 대한 지식 • 차량운행 및 유지보수·관리에 대한 기초 지식
------	--

응시요건	▶ 필수요건 1.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※ 관련분야 실무경력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국회, 지방의회, 공공기관, 민간기업, 법인 등에서 의전, 운전, 행정 업무로 근무한 실무 경력 4.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이상 소지자(국내자격증에 한함) ▶ 우대요건 1. 무사고 운전 경력자(공고 게시일 이후 출력한 운전경력증명서(전체경력) 제출) 2. 의전 업무 특성상 평일 야간 및 주말·공휴일 근무 가능한 자
------	---

붙임 제출서류 서식 각 1부(별도 첨부). 끝.